

용인시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 심사 조례(폐지)

제정 2003. 10. 17 조례 제 472호
폐지 2015. 10. 6 조례 제1496호(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)

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

제정 2015. 10. 6 조례 제1496호

본문 생략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용인시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 심사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 생략